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 변경신고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업체명(양식장명·선박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주된 사무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생산·가공 시설	생산·가공시설의 종류	생산·가공시설의 명칭	
	생산·가공시설의 소재지	가공선박의 총톤수	
	제조공장(처리장 또는 양식장) 면적(m <sup>2</sup> )	건물의 종류 및 연면적의 합계(m <sup>2</sup> )	
	생산·가공품의 종류	냉장 및 동결 능력(M/T)	
	1일 또는 연간 생산능력	용수의 종류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제5항에 따른 수산물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시설 등록증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